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수입업체의 파생모델 등록 · 판매 가능 여부

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비용을 부담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중국생산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국내 해당인증기관에서 인증 확인서만 발급받아 동일 모델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안전인증신청업무를 대행한 국내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사후관리(정기검사)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와 수입업체가 파생모델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자가 받는 것이므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 등의 의무는 제조자에게 있으며, 안전인증 전기용품의 변경등록 또한 제조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변경 및 파생모델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의한 파생모델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한 국내수입유통은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국내대리인 또는 국내수입업체 모두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Q 양수양도에 따른 제품의 법적 책임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양수 양도를 통해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증을 양도 받을 경우 기존 양도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양수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예를 들어 전기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양수인이 책임한도 여부와 제품의 하자로 A/S 를 할 경우 무상기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A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전기용품 안전인증관련 모든 권리 의무를 양수인에게 넘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양도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양수인은 제품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도 양수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A/S 등에 관해서는 양도양수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전인증 표시의 위치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K60950의 "1.7 표시 및 지시사항")에 의하면 "기기의 외부로부터 표시를 볼 수 없는 경우, 문이나 커버를 열었을 때 직접 볼 수 있다면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당사에거 개발 중인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사항의 위치에 대해 기존의 제품 뒷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의 경우 토너 교환 등을 위한 커버를 열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인증표시사항을 부착하였을 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적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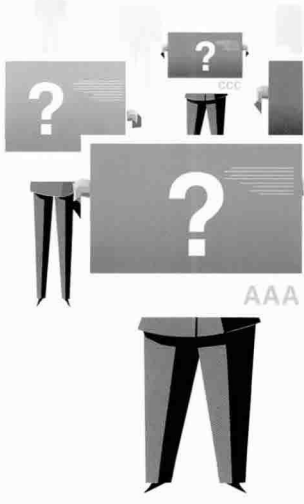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표시하는 표지는 당해 제품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 내부에 위치한 표시는 불가합니다.